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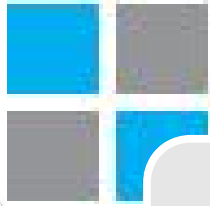
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평가 매뉴얼

20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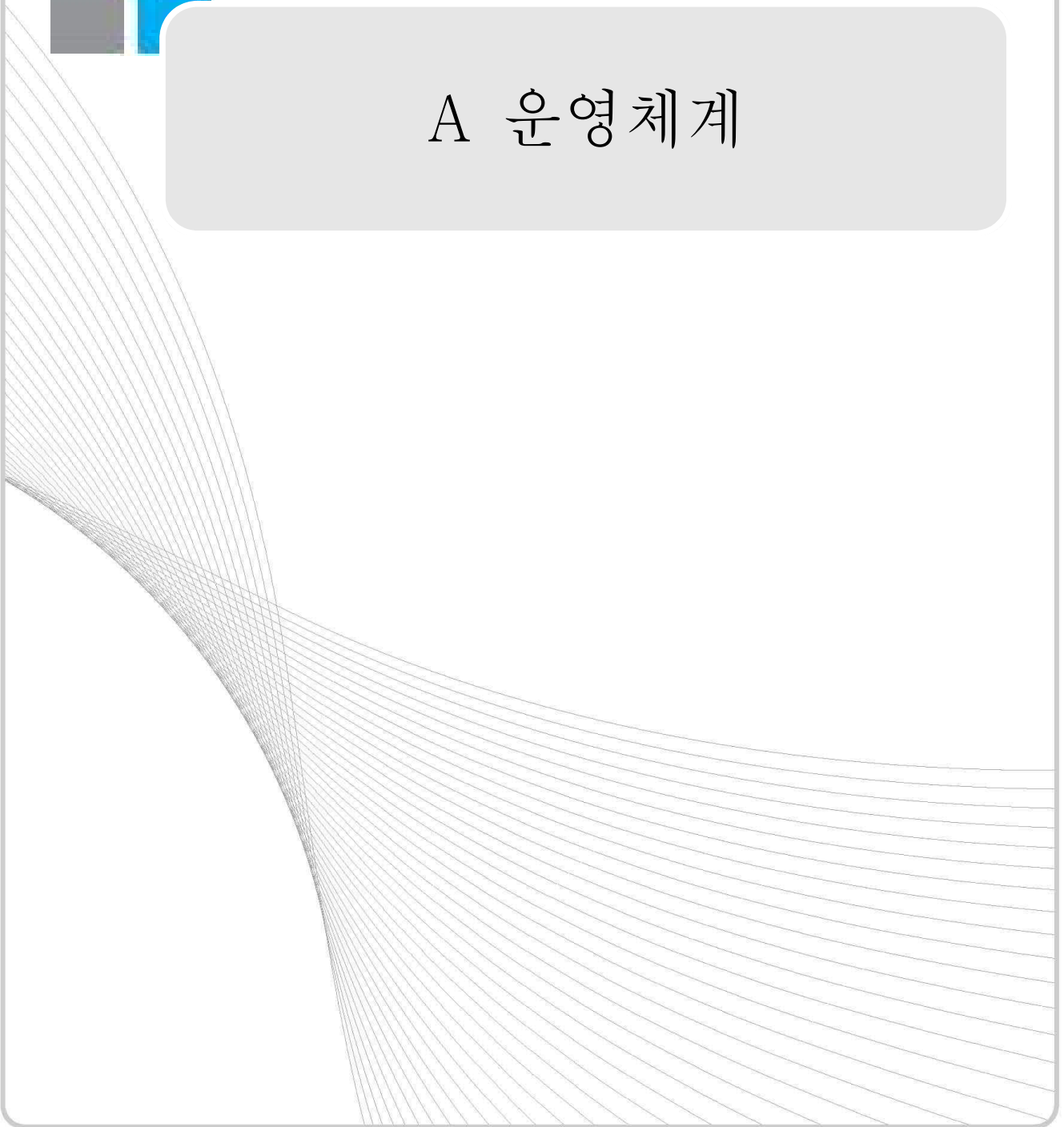
산안법 제32조

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평가지표

분야	평 가 항 목		평 가 지 표		배 점
합 계					1,000
A 운영체계	소 계				400
	A.1	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	1.1	운영방침 및 교육계획의 수립의 적정성	30
			1.2	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	30
	A.2	인적자원 보유및 교육훈련 (인적기준)	2.1	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정규직 채용 노력도	100(+20)
			2.2	직원 교육·훈련의 적정성	70
			2.3	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	40
	A.3	시설·장비 보유및 유지관리 (물적기준)	3.1	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	40
			3.2	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	20
			3.3	휴게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의 적정성	20(+5)
	A.4	교육운영방식	4.1	체험·실습교육 운영의 적정성	50
	가 감 점 항 목	A.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	5.1	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	+10
			5.2	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-15~-80
			5.3	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-2~-20
B 업무성과	소 계				600
	B.1	교육관리	1.1	교육실시 인원 및 VR체험교육 활성화 노력	70(+20)
			1.2	교육일정 준수 및 변경 일정 공지의 적정성	40
			1.3	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	40(-10)
			1.4	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	140(-30)
			2.1	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	50
	B.2	교육생 관리	2.2	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 여부	60(-30)
			2.3	교육운영 실적관리의 적정성	20
	B.3	고객 만족도	3.1	교육이수자 만족도	100
	B.4	자체평가 및 개선 노력	4.1	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의 적정성	40
			4.2	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의 적정성	40



A 운영체제

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

세부평가 A.1.1	운영방침 및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(배점:3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운영방침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	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를 모두 반영한 경우	☐ 30
	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 중 1건을 미반영한 경우	☐ 20
	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 중 2건 이상을 미반영한 경우	☐ 10
	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	☐ 0
평가취지	○ 합리적인 교육 수요 예측을 통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내용의 충실도 및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함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(이하 내용 동일) -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- 지부 또는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또는 출장소 1개소) ○ 운영방침 및 교육계획의 수립여부는 연간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*되었는지 문서화**된 서류(이하 서류)를 확인하여 평가 * 매년 2월 이내 수립한 교육계획에 한함. ※ 연중 신규 등록기관 : 등록 후 1개월 이내 ** 내부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(등록번호)와 등록일자를 부여한 문서만 인정(이하 “문서”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)	
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 교육과정명, 교육 대상(과정별 인원 포함) 및 목적 ② 연간 교육일정 : 월별 일정, 강사, 장소 및 시간 등 ③ 교육생 확보 방안(교육과정 홍보 방안 포함) ④ 교육내용 :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및 교육 방법(강의식, 실습식 등) ⑤ 교육생 만족도 향상 방안		
현장확인사항	○ 연간교육계획서, 업무매뉴얼 등	

세부평가 A.1.2		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(배점:3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	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라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		☐ 30
	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1건 있을 경우		☐ 10
	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2건 있을 경우		☐ 0
평가취지			
○ 교육기관의 업무관리체계 따른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을 문서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기관 운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교육기관의 업무관리 체계는 교육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 ※ 등록 기준상의 자격기준에 맞는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하고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 의뢰			
<표2> 미흡사항 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 사항을 문서화 하지 않은 경우 ② 조직도상 인력이 실제 업무 분장 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조직도, 업무분장, 고용계약서 등			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(인적기준)

세부평가 A.2.1		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정규직 채용 노력도(배점:100점, 가점:20점)	
평가지표		평가기준	평가결과
		총 점	
전문인력 추가확보 및 활용	■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활용(배점:80점)		
	교육과목별 복수강사 확보여부(점수 상한 25점)		
	내부강사 강의비율(점수 상한 25점)		
	고급강사의 강의비율(점수 상한 30점)		
정규직 채용 노력도	■ 법적인력기준 등 정규직 채용 여부(배점:20점, 가점:20점)		
	법적 인력기준(3명) 정규직 전문강사 100% 채용		☐ 20
	법적 인력기준(3명) 정규직 전문강사 50%이상~100%미만 채용		☐ 10
	법적 인력기준(3명) 정규직 전문강사 50%미만 채용		☐ 0
	법적 인력기준(3명) 외 추가 정규직 전문강사 1명 이상 채용(가점:20점)		
평가취지		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
○ 우수 교육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는 각 과정별 강사현황에 대한 문서(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) 및 자격증, 학위 취득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※ 문서화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불인정			
○ 교육과목별 복수강사 확보 여부는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체할 수 있는 강사 확보여부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			
- 복수강사 확보 비율 점수 : (점수 상한 25점)			
= 25점× $\frac{\text{대체강사수(명)}}{\text{등록강사수}+\text{평가대상기간시간표강사수}*(\text{명})}$ × 1.5			
* 시간표강사수 : 등록강사수를 제외한 연간시간표상 강사수			
※ 1명의 강사가 2개 과목을 담당할 경우 1명으로 인정			
○ 내부강사 강의 비율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내부강사의 강의 비율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			
- 내부강사 강의 비율 점수 : (점수 상한 25점)			
= 25점× $\frac{\text{내부강사 강의시간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시간}}$ +0.5			
* (내부강사) : 해당 교육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3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			
○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은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체 교육시간 중에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			
-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 점수 : (점수 상한 30점)			
= 30점× $\frac{\text{고급강사강의시간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시간}}$ +0.5			
* (고급강사) :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3의 인력기준의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고용계약서, 임금대장, 등록강사서류 등			

세부평가 A.2.2	직원 교육·훈련의 적정성(배점:7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직원 교육·훈련의 적정성	☒ 교육기관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(배점:30점)	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5 이상인 경우	☐ 30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4 이상 ~ 0.5 미만인 경우	☐ 20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3 이상 ~ 0.4 미만인 경우	☐ 10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2 이상 ~ 0.3 미만인 경우	☐ 5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2 미만인 경우	☐ 0
	☒ 내부강사의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(배점:40점)	
	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비율(횟수)이 0.5 이상인 경우	☐ 40
	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비율(횟수)이 0.3 이상 ~ 0.5 미만인 경우	☐ 20
	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	☐ 0
평가취지	○ 교육기관의 직원(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)에 대한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교육·훈련 이행을 유도하여 강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기관 직원(내부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)에 대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 - (직원역량강화활동) : 문서화된 연간 교육·훈련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행한 안전보건관련 교육 활동 참여비율(시간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직원별 역량강화활동 총시간}}{\text{직원수} \times 16\text{시간}}$ * 직원수 : 내부강사 및 과정운영담당자 ○ 내부강사에 대한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 - (강사강의능력향상활동) : 문서화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이외에 추가로 강의능력향상을 위해 관련분야 세미나, 학회 참석 등의 활동 참여비율(횟수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강사별 강의능력향상활동 총횟수}}{\text{내부강사* 연인원}}$ * (내부강사) : 해당 교육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3 강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	
현장확인사항	○ 교육·훈련 계획수립 문서, 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의 외부교육 이수증 등	

세부평가 A.2.3	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(배점:4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	■ 교육생 안전관리계획 시행 여부(배점:20점)	
	교육장 안전관리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적정한 경우(배점:10점)	
	교육생 대상으로 손해배상 보험이 가입된 경우(배점:10점)	
	■ 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(배점:20점)	
	비상 대피경로 교육장내 게시 및 교육생 대상 안내 여부(배점:8점)	
	교육장 내 소방설비 및 장비(소화기 등)가 갖추어져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(배점:8점)	
	전용구급함(응급조치 물품)이 구비되어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(배점:4점)	
평가취지	○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 방법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시 교육생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 ○ 교육생 안전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적정한 경우 - (교육장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여부) : 안전시설 관리 및 유지계획, 비상 연락망 구축, 비상 대피경로게시, 비상시 대처방안 게시 및 안내, 응급조치물품 구비 및 관리방안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- (교육생 손해배상 보험) : 교육생에게 발생한 생명,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여부 ○ 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는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	
현장확인사항	○ 전용구급함, 응급조치 물품구비 확인, 보험가입서류, 교육장 안전점검일지 등	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

세부평가 A.3.1	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(배점:4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	■ 실습교육용 장비 보유 여부(배점:10점)	
	실습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8종 이상 보유한 경우	☐ 10
	실습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5종 이상 ~ 8종 미만 보유한 경우	☐ 5
	실습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3종 이상 ~ 5종 미만 보유한 경우	☐ 3
	실습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3종 미만 보유한 경우	☐ 0
	■ 실습교육용 보호구 보유 여부(배점:10점)	
	실습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10종 이상 보유한 경우	☐ 10
	실습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8종 이상 ~ 10종 미만 보유한 경우	☐ 5
	실습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4종 이상 ~ 8종 미만 보유한 경우	☐ 3
	실습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4종 미만 보유한 경우	☐ 0
	■ 보유 장비의 활용실적(배점:15점)	
	보유장비(실습교육용 장비 및 보호구) 활용실적	
	■ 보유장비 유지·관리상태의 적정성(배점:5점)	
	보유 장비가 모두 정상작동 되는 경우	☐ 5
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% 이상 ~ 100% 미만인 경우	☐ 3	
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% 미만인 경우	☐ 0	
평가취지		
○ 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실적 확인을 통해 실습 및 체험식 교육을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실습교육 : 실습용 장비 및 보호구를 활용한 교육 ○ 실습교육용 장비 보유 여부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5 제4호 다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용 교육장비로 교육생이 직접 조작 및 관찰이 가능한 것 ○ 실습교육용 보호구 보유 여부는 산안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3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로 교육생이 직접 조작 및 관찰이 가능한 것 ○ 보유장비(실습교육용 장비 및 보호구) 활용실적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 (점수 상한 15점) - 활용실적 점수 : $10점 \times \left(\frac{\text{보유 장비를 활용한 교육시간}}{\text{총 교육시간}} + 0.75 \right)$		
현장확인사항		
○ 실제 장비, 장비이력 관리대장, 장비사용대장, 교육결과보고서 등		

A.3.1

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(배점:40점)

[참고1] 실습교육용 장비 및 보호구

실습교육용 장비 및 보호구
[산안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관련]

1. 「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5 제2호 다목」 안전보건관리담당자용 교육장비 적용

- (1) 절연저항측정기
- (2) 접지저항측정기
- (3) 클램프메타
- (4) 검전기(저·고·특고압용일 것)
- (5) 소음측정기
- (6) 검지관 등 가스·증기농도 측정기 세트,
- (7)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(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)
- (8) 심폐소생 인체모형
- (9) 혈압계
- (10)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
- (11)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

2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3호」의 보호구 적용

- 가.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
- 나. 안전화
- 다. 안전장갑
- 라. 방진마스크
- 마. 방독마스크
- 바. 송기마스크
- 사. 전동식 호흡보호구
- 아. 보호복
- 자. 안전대
- 차.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
- 카. 용접용 보안면
- 타.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

세부평가 A.3.2		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(배점:2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	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비율*이 80% 이상인 경우		☐ 20
	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비율이 60% 이상 ~ 80% 미만인 경우		☐ 10
	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비율이 60% 미만인 경우		☐ 5
	연간 교육과정 운영횟수가 없을 경우		☐ 0
평가취지			
○ 자체 강의실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			
* 등록 강의실 활용 비율(%) : $\frac{\text{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횟수}}{\text{평가대상기간 교육과정 운영 횟수}-\text{기업맞춤형 방문교육횟수}} \times 100$ - 평가대상기간에 실시한 모든 교육을 기업맞춤형 방문교육으로 운영하였을 경우는 20점으로 인정 ※ 기업맞춤형 방문교육 : 특정 기업과 계약에 따라 해당 기업 및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전용의 교재 및 교안을 사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교육 (평가시 계약서, 교재 및 교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업이름만 바꿔 사용하는 단순 교재 및 교안은 불인정)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교육계획서, 교육결과서 등 등록강의실 사용 실적			

세부평가 A.3.3		휴게 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의 적정성(배점:20점, 가점: 5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 점			
휴게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 보유 여부	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(배점:10점) 휴게공간은 사무실 및 강의실과 별도 공간에 해당 교육기관 전용으로 확보 되어야하고, 냉·난방 시설, 소파(의자), 탁자 및 냉온정수기가 있는 등 이들 모든 기준을 만족할 경우 ☐ 10 휴게공간이 사무실 및 강의실과 별도 공간에 해당 교육기관 전용으로 확보 되어있지 않거나, 냉·난방 시설, 소파(의자), 탁자 및 냉온정수기가 없는 경우 ☐ 0		
	■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 추가 편의시설을 보유(배점:10점) 휴게공간 내에 <u>추가 편의시설</u>* 항목 중 4가지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☐ 10 휴게공간 내에 추가 편의시설 항목 중 4가지 미만일 경우 ☐ 0		
교육생 주차지원 가능여부	■ 교육생 주차 지원 가능여부(가점:5점) 해당 교육장 반경 100m 이내에 10인 이상 무료 주차 가능한 주차 시설을 보유한(해당시설과 사용계약이 된 경우) 경우 ☐ 5 해당 교육장 반경 100m 이내에 10인 이상 무료 주차 가능한 주차 시설을 보유(해당시설과 사용계약이 된 경우)하지 못한 경우 ☐ 0		
평가취지	○ 교육생 편의성 강화 시설확보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에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 * (추가 편의시설 항목) : ① 고정식 휴대전화 충전기(2개 이상 인정), ② 커피 또는 음료 자판기(무료제공 다과 인정), ③ 무료 무선인터넷, ④ 인터넷PC, ⑤ TV, ⑥ 상시비치 안전 보건 관련 자료(책자, 월간지 등)		
현장확인사항	○ 시설물 사용 계약서, 현장 확인 등		

A.4 교육운영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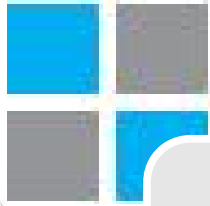
세부평가 A.4.1	체험·실습교육 운영의 적정성(배점:5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체험·실습교육 운영의 적정성	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은 집체교육(온라인교육 포함)으로 실시하고, 체험 및 실습교육도(은)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(온라인교육 방식으로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체험실습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체험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)	☐ 50
	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은 집체교육(온라인교육 포함)으로 실시하고, 체험교육도(은)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(실습교육 미실시)(상동)	☐ 25
	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은 집체교육(온라인교육 포함)으로 실시하고, 실습교육도(은)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(체험교육 미실시)(상동)	☐ 10
	온라인교육 방식으로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	☐ 0
평가취지		
○ 안전보건교육의 체험실습교육 등 집체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혼합과정 운영 등에 대한 평가 - 교육과정 : 교육생에 대한 1회 교육시 전체커리큘럼 - 교육기관 컨소시엄 : 기관 간 컨소시엄을 통해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연계 운영하는 것(예 : 온라인교육만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체험실습교육 운영이 어려워 집체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) * 체험 및 실습교육 : 보유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과 VR체험교육을 모두 포함한 교육 * 실습교육 : 보유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 * 체험교육 : VR콘텐츠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 * VR콘텐츠 : HMD를 활용하여 가상체험을 할수 있는 동영상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계획서, 체험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, 컨소시엄 구성 계약서 등		

A.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(가감점 항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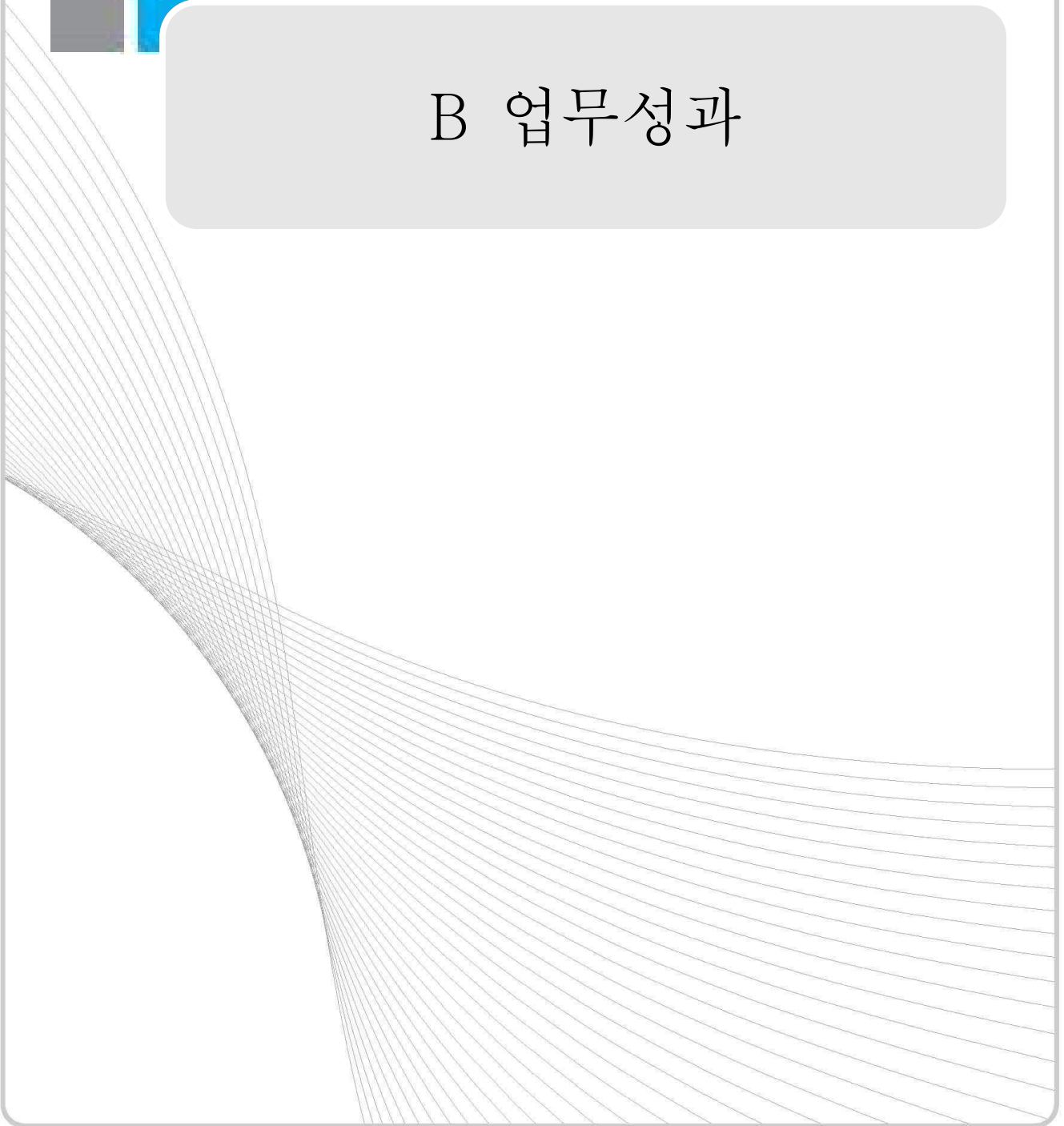
세부평가 A.5.1	포상실적(가점:10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포상실적	평가대상기간내 기관 및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(가점:10점)	
평가취지		
○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평가대상기간내 기관 및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분야로 아래의 포상 훈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 (최대 10점) - 대통령 포상 : 5점 × 포상수 - 국무총리 포상 : 4점 × 포상수 - 고용노동부장관 포상 : 3점 × 포상수 - 공단 이사장 포상 : 2점 × 포상수 ※ (예시) 교육기관이 대통령 포상을 받았고, 장관포상을 받은 직원 1명, 공단 이사장 포상을 받은 직원이 2명 있을 경우 : 총 12점(5점+3점+2점+2점) 이나 상한 10점 부여		
현장확인사항		
○ 표창장 실물, 포상 일련번호 등		

세부평가 A.5.2		업무정지 처분(감점: -80점 ~ -15점)	
평가지표		평가기준	평가결과
업무정지 처분		평가대상기간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감점: -80점 ~ -15점)	
평가취지			
		○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	
주요평가내용			
	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평가 기준 -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 -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-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○ 평가대상기간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-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점수 : -15점 × 처분 개월수(최대 감점 -80점) ※ (예시)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을 받은 경우 실제 감점은 -90점(-15점×6개월)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-80점 부여	
현장확인사항			
		○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 등	

세부평가 A.5.3	시정조치 경고처분(감점: -2점 ~ -2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시정조치·경고처분	평가대상기간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감점: -2점 ~ -20점)	
평가취지		
○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평가 기준		
-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·경고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		
-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시정조치·경고 처분 건수 평가		
○ 평가대상기간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		
-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점수 : -2점 × 처분 건수		
(최대 감점 -20점)		
※ (예시) 교육기관이 시정조치 6건, 경고처분 5건을 받았을 경우 실제 감점은 -22점 (-2점×11건)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-20점 부여		
</		



B 업무성과



B.1 교육관리

세부평가 B.1.1	교육실시 인원 및 VR체험교육 활성화 노력(배점:70점, 가점:2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안전보건교육 실시인원 적정성	■ 안전보건교육 실시인원 적정성(배점:30점)	
	안전보건교육 연간실시인원 100% 이상	☐ 30
	안전보건교육 연간실시인원 90% 이상~100%미만	☐ 25
	안전보건교육 연간실시인원 80% 이상~90%미만	☐ 20
	안전보건교육 연간실시인원 70% 이상~80%미만	☐ 15
	안전보건교육 연간실시인원 60% 이상~70%미만	☐ 10
	안전보건교육 연간실시인원 60% 미만	☐ 0
VR체험교육 활성화 노력	■ VR체험교육 실시 여부(배점:40점)	
	VR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, 체험교육계획에 따라 모두 실행된 경우	☐ 40
	VR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으나, 체험교육이 일부 실행되지 않은 경우	☐ 20
	VR장비를 활용하여 체험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체험교육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	☐ 0
	■ VR체험교육 장비 보유여부(가점:20점)	
	체험교육에 필요한 VR장비를(최소 40개) 보유한 경우	
평가취지		
○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및 체험교육 활성화 노력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유도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안전보건교육 실시인원 적정성		
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연간실시인원 비율 $: 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총수료인원수(명)}}{80\text{명} \times \text{평가대상기간(월)}} \times 100$		
* 80명 : 1개월에 최소 2회, 1회당 40명 교육생수료를 기준으로 평가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계획서, 체험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 등		

세부평가 B.1.1	교육실시 인원 및 VR체험교육 활성화 노력(배점:70점, 가점:20점)
주요평가내용	
	○ 안전보건교육 실시인원 적정성 평가 방법 - 온라인교육 방식으로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체험 또는 실습교육을 집체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체험 또는 실습교육생을 교육수료 인원으로 인정 - 온라인교육 방식으로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: 0점 처리 ○ 체험교육장비 보유 여부 - HMD(Head mounted Display) 장비를 보유할 경우 인정 ※ HMD 장비 : 종이재질의 일회성 장비가 아닌 것 (예:카드보드) ○ VR콘텐츠 활용 여부 - 체험교육계획 : VR 장비 및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적정하게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 인정 (연간교육계획과 별도로 작성하여도 인정) - 체험교육 실행 여부 : 체험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제작 또는 공단에서 보급한 VR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기관별 평가실시일 이전까지 실시한 실적을 인정 ※ '18년 상반기 공단에서 안전보건관련 VR 콘텐츠(정보전달형) 50~60종을 교육 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임 ※ 교육결과보고서에 체험교육 사진 첨부
현장확인사항	
	○ 교육계획서, 체험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 등

세부평가 B.1.2	교육일정 준수 및 변경일정 공지의 적정성(배점4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교육일정 준수 및 변경일정 공지의 적정성	■ 교육일정 준수 여부(배점:20점)	
	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0건인 경우	☐ 20
	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1건인 경우	☐ 10
	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2건인 경우	☐ 5
	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3건 이상인 경우	☐ 0
	■ 변경된 교육일정 공지 여부(배점:20점)	
	교육 시작일 전 5*일 이상 공지한 비율**이 80% 이상인 경우	☐ 20
	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60% 이상 ~ 80% 미만인 경우	☐ 15
	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50% 이상 ~ 60% 미만인 경우	☐ 10
	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50% 미만인 경우	☐ 5
평가취지		
○ 교육일정 준수 및 변경된 일정 공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일정 준수 여부		
- (임의변경) : 교육일정 변경 시 일정변경 내용 및 변경된 일정을 포함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게시 및 배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		
○ 변경된 교육일정 공지의 적정성		
* 5일 : 교육 시작당일, 토, 일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(대체 휴일은 포함)		
* 공지 비율 : $\frac{5일 이상 공지한 교육수}{총 일정 변경 교육수} \times 100$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, 온·오프라인 공지 내역 등		

세부평가 B.1.3		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(배점:40점, 감점:-1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 점			
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	■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(배점:10점)		
	최근 6개월 이내 매 2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며, 홈페이지 또는 카페, 블로그 등 교육기관 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널(이하 온라인 채널)이 있는 경우(모두 해당할 경우)		☐ 10
	최근 6개월 이내 매 2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거나, 홈페이지 또는 카페, 블로그 등 교육기관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널(이하 온라인 채널)이 없는 경우		☐ 0
	■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(배점:15점)		
	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등록된 자료가 있는 경우(모두 해당할 경우)		☐ 15
	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,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		☐ 0
	■ 온라인상에서 질의·응답이 가능한 경우(배점:15점)		
	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평가기간 중 교육생 질의에 대해 90%이상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(모두 해당할 경우)		☐ 15
	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, 평가기간 중 교육생 질의에 대해 90%미만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		☐ 0
	■ 커뮤니티·홈페이지 운영의 부적정(감점:-10점)		
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내용 확인시 부적정 내용이 있는 경우		-10	
평가취지			
○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교육기관과 교육생간 환류(Feed Back) 및 소통을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-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과 링크를 제공할 경우 15점 인정 ○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부적정 내용 - 본문(자료 제목 등)의 내용과 붙임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			

세부평가 B.1.4	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(배점:140점, 감점:-3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	■ 교육목표에 적합한 주교재 사용여부(배점:50점)	
	업종별 필수교재 외에 자체적으로 심화 교재(제본 형태)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	□ 50
	공단 발간 자료(관리감독자용 모듈형교재)를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	□ 10
	단순 출력물을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	□ 0
	■ 교육내용의 적정성(배점:80점)	
	업종별 필수교재의 공통사항(2개) 및 각 업종별 필수교재(각 4개이상)*를 보유하고, 필수교재(안전보건일반 제외) 내용 중 <표3>의 필수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	□ 80
	업종별 필수교재의 공통사항(2개) 및 각 업종별 필수교재(각 3개)*를 보유하고, 필수교재(안전보건일반 제외) 내용 중 <표3>의 필수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	□ 60
	업종별 필수교재의 공통사항(2개) 및 각 업종별 필수교재(각 2개)*를 보유하고, 필수교재(안전보건일반 제외) 내용 중 <표3>의 필수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	□ 40
	업종별 필수교재의 공통사항(2개) 및 각 업종별 필수교재(각 1개)*를 보유하고, 필수교재(안전보건일반 제외) 내용 중 <표3>의 필수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	□ 20
	업종별 필수교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	□ 0
	■ 산안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교재 사용여부(배점:10점)	
	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을 경우	□ 10
	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	□ 0
	■ 교육내용의 부적정(감점:-30점)	
	교육내용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없는 다른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	-30
평가취지		
○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육 실시를 유도하여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
세부평가 B.1.4	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(배점:140점, 감점:-30점)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평가내용	○ 심화교재 : 전문적이고 다양한 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업종별 필수교재 외에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교재 ※ 심화교재(예시) <table> <tr> <th>업종</th><th>교육과정</th></tr> <tr> <td>화재 폭발 예방</td><td>1. 위험물 저장 및 취급관리 2. 연소이론 3. 화재 폭발의 종류 및 특성 4. 화재 폭발의 영향 및 예방대책</td></tr> <tr> <td>화학물질 관리</td><td>1.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의 이해 2. 유해물질의 취급 3. 유해물질에 대한 공학적 관리</td></tr> </table> ○ 교육내용 적정성 * 업종별 필수교재(17개) <table> <tr> <th>업종</th><th>교육과정</th></tr> <tr> <td>공통</td><td>① 안전보건일반 - 안전보건개론, 산업안전보건법령, 안전보건표지 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, 응급조치요령 ② 지게차 운행시 안전작업</td></tr> <tr> <td>제조업</td><td>① 기계안전 ② 전기안전 ③ 화공안전 ④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관리 ⑤ 근골격계질환 예방</td></tr> <tr> <td>서비스업</td><td>① 배달 및 마트 근로자 ② 환경미화원 ③ 음식물 조리 근로자 ④ 건물관리업 근로자(경비원, 청소관련 근로자 등) ⑤ 보육 및 복지시설 근로자(의료종사자 포함) ※ 교육내용에 근골격계질환예방 포함</td></tr> <tr> <td>건설업</td><td>① 건설기계일반 ② 전기안전 ③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관리 ④ 질식재해예방 ⑤ 근골격계질환 예방</td></tr> </table> <표3> 필수 반영 사항 <table> <tr> <th>필수교육내용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 <tr> <td>① 유해·위험요인</td><td>- 작업별 근로자에게 사고·상해 및 질병을 일으킬 요인</td></tr> <tr> <td>② 사고사례</td><td>-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사례(직업병포함)</td></tr> <tr> <td>③ 보호구 착용방법</td><td>-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</td></tr> </table> ○ 온라인교육 방식으로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“교육내용의 적정성 및 교육내용 부적정”만 평가 ○ 교육내용의 부적정 * (다른 교육내용) : 성희롱예방교육, 청렴교육, 금융상품안내 등 현장확인사항 ○ 교육계획, 교육결과서, 주교재 및 부교재 등 실물 책자, 교육과정 동영상(콘텐츠) 등	업종	교육과정	화재 폭발 예방	1. 위험물 저장 및 취급관리 2. 연소이론 3. 화재 폭발의 종류 및 특성 4. 화재 폭발의 영향 및 예방대책	화학물질 관리	1.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의 이해 2. 유해물질의 취급 3. 유해물질에 대한 공학적 관리	업종	교육과정	공통	① 안전보건일반 - 안전보건개론, 산업안전보건법령, 안전보건표지 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, 응급조치요령 ② 지게차 운행시 안전작업	제조업	① 기계안전 ② 전기안전 ③ 화공안전 ④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관리 ⑤ 근골격계질환 예방	서비스업	① 배달 및 마트 근로자 ② 환경미화원 ③ 음식물 조리 근로자 ④ 건물관리업 근로자(경비원, 청소관련 근로자 등) ⑤ 보육 및 복지시설 근로자(의료종사자 포함) ※ 교육내용에 근골격계질환예방 포함	건설업	① 건설기계일반 ② 전기안전 ③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관리 ④ 질식재해예방 ⑤ 근골격계질환 예방	필수교육내용	세부내용	① 유해·위험요인	- 작업별 근로자에게 사고·상해 및 질병을 일으킬 요인	② 사고사례	-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사례(직업병포함)	③ 보호구 착용방법	-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
업종	교육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
화재 폭발 예방	1. 위험물 저장 및 취급관리 2. 연소이론 3. 화재 폭발의 종류 및 특성 4. 화재 폭발의 영향 및 예방대책																								
화학물질 관리	1.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의 이해 2. 유해물질의 취급 3. 유해물질에 대한 공학적 관리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	교육과정	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	① 안전보건일반 - 안전보건개론, 산업안전보건법령, 안전보건표지 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, 응급조치요령 ② 지게차 운행시 안전작업																								
제조업	① 기계안전 ② 전기안전 ③ 화공안전 ④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관리 ⑤ 근골격계질환 예방																								
서비스업	① 배달 및 마트 근로자 ② 환경미화원 ③ 음식물 조리 근로자 ④ 건물관리업 근로자(경비원, 청소관련 근로자 등) ⑤ 보육 및 복지시설 근로자(의료종사자 포함) ※ 교육내용에 근골격계질환예방 포함																								
건설업	① 건설기계일반 ② 전기안전 ③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관리 ④ 질식재해예방 ⑤ 근골격계질환 예방																								
필수교육내용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유해·위험요인	- 작업별 근로자에게 사고·상해 및 질병을 일으킬 요인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사고사례	-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사례(직업병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
③ 보호구 착용방법	-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

B.2 교육생 관리

세부평가 B.2.1		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(배점5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	
총 점			
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	■ 교육생 출결관리 방법의 지정 여부(배점:30점)		
	과정별로 출결관리 방법이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(배점:20점)		
	본인 확인 절차가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(배점:10점)		
	■ 교육생 출결관리의 실행 여부(배점:20점)		
	과정별 지정된 출결관리 방법에 따라 출결관리를 실시한 경우		☐ 10
	출결관리의 명확성은 아래의 등급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(최대 10점) ① 동영상촬영, 지정좌석 운영 및 확인, 매시간 출석확인 등 교육생의 상시 출석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: 10점 ② 교육과정 중 2회 이상 출결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: 5점 ③ 교육과정 중 1회만 출결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: 3점 ④ 그 외 : 0점		☐ 10 ☐ 5 ☐ 3 ☐ 0
평가취지			
○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수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생이 이수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생 출결관리 방법 및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평가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교육계획서, 출석부(해당 과정 수강인원의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및 교육 결과 보고서, 온라인 수강관리 시스템 등			

세부평가 B.2.2	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 여부(배점:60점, 감점 :-3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 여부	■ 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여부(배점:30점) 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5% 미만 ☐ 30 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5% 이상 ~ 10% 미만 ☐ 20 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10% 이상 ~ 15% 미만 ☐ 10 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15% 이상 ~ 20% 미만 ☐ 5 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20% 이상 ☐ 0	
	■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(배점:30점) 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10% 미만 ☐ 30 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10% 이상 ~ 20% 미만 ☐ 20 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20% 이상 ~ 30% 미만 ☐ 10 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30% 이상인 경우 ☐ 0	
	■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 (감점 : -30점) 업종별 구분없이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	
평가취지		
○ 학급당 정원 적정성 및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여부 평가를 통해 학습효과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여부 - 초과 교육과정 비율(%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과정 수} - 60\text{명 이하 교육과정 수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 교육과정 수}} \times 100$ ○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(관리감독자 교육 제외) - 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은 제조업 건설업 및 그 외의 업종서비스 기타 업종 등 교육생을 혼합하여 교육하는 과정, 1개 교육과정 전체 교육생 중 이종업종 비율이 5%를 초과할 경우 해당에 총원 40명 교육과정 중 제조업 38명, 건설업 1명 서비스업 1명일 경우 이종업종 비율 5%이하로 단일업종 교육으로 인정 - 교육생 비율(%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수료자 수} - \text{단일업종교육 수료자 수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수료자 수}} \times 100$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계획, 교육결과서 등		

세부평가 B.2.3	교육운영 실적관리의 적정성(배점:2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교육운영 실적관리의 적정성	■ 전년도 교육운영 실적 제출기한 준수 여부(배점:10점)	
	실적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제출 기한 후 실적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	☐ 10
	실적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제출 기한 후 실적 변경을 1회 이상 한 경우	☐ 5
	실적 제출기한을 초과하거나 제출 기한 후 실적 변경을 3회 이상 한 경우	☐ 0
	■ 교육운영 실적관리의 전산화 여부(배점:10점)	
	교육운영 실적을 안전보건교육 전용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	☐ 10
	교육운영 실적을 엑셀, 한글 등 상용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	☐ 7
	수기로 작성된 출석부로 관리하는 경우	☐ 3
	출석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	☐ 0
평가취지	○ 전년도 교육운영 실적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및 교육운영 실적을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교육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전년도 교육운영 실적 제출기한(매년 1월 20일)의 적정성 - 제출기한은 최종 실적파일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	
현장확인사항	○ 고용노동부 문서접수일, 현장 실적관리 실태	

B.3 고객 만족도

세부평가 B.3.1		교육이수자 만족도(배점:10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교육이수자 만족도	▣ 교육생 만족도 측정결과		
평가취지	○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향후 교육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 만족도 측정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○ 외부용역기관에서 교육기관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		
현장확인사항	○ 외부 리서치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		

B.4 자체평가 및 개선노력

세부평가 B4.1		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의 적정성(배점:4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 점			
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의 적정성	▣ 교육생 의견수렴 실행 여부(배점:40점)		
	연간 교육이수자 중 50% 이상에 대해 설문응답을 받았고 해당 설문결과 실물을 90%이상 보존하는 경우	☐ 25	
	자체 평가를 위한 교육생 의견수렴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	☐ 15	
평가취지	○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향후 교육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	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생 의견수렴 실행 여부는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평가		
현장확인사항	○ 교육계획서, 설문조사결과, 설문지 원본 등		

세부평가 B4.2		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의 적정성(배점:4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 점			
자체평가에 의한 개선실적의 적정성	■ 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여부(배점:40점)		
	개선 계획에 따라 모두 개선한 경우(배점:20점)		
	미흡한 사항 중 60% 이상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(배점:10점)		
	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미흡한 사항을 도출한 경우(배점:10점)		
평가취지			
○ 자체평가에 의한 개선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실적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평가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자체 설문조사 보고서, 자체 개선계획 및 현장실사 결과 등			